

대구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가단141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1)에 관하여 2022. 4. 25.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2022. 5. 4. 접수 제52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수정

별지

1)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면, B가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E호 중 1/3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 앞으로 2022.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이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별지1 목록에서 위 아파트만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아파트 중 B 1/3지분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